

# 예 산 총 칙

제1조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 
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 한도액
계	<b>715,977,431</b>	<b>23,876,324</b>
일반회계	582,486,122	17,474,585
특별회계	133,491,309	6,401,739
기타특별회계	23,688,179	710,645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주택사업특별회계</li> <li>• 교통사업특별회계</li> <li>•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</li> <li>• 기반시설특별회계</li> </ul>	773,020 18,583,015 3,996,018 336,126	23,190 557,490 119,881 10,084
공기업특별회계	109,803,130	5,691,094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상수도사업특별회계</li> <li>• 하수도사업특별회계</li> <li>•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</li> </ul>	25,858,999 63,844,131 20,100,000	775,770 1,915,324 3,000,000

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”과 같다.

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“해당없음”

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“계속비사업조서”와 같다.

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,436,703천원으로 한다.

제6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 
2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7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 
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